

#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10월 9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10월 10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9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(2007년 10월 23일)  
상정 의결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박한권)

### 제안이유

- 신속하고 시민편의적인 통·반 운영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동 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통·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규정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며
-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 하려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통·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(안 제4조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대통령제 실시로 인해 지역에서 통장선거시 주민간의 반목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?	○ 근본적으로 통장수당 인상에 따른 통장선거가 과열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 인식하고 있음. 다만,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통장 직선제가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.

#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음

나. 반대토론 : 없음

### 5. 심사결과 : “원안의결”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59호
의결 년월일	2007. 10. 26 (제139회)

제출년월일 : 2007. 10. 9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 □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반 운영을 통하여 시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고자, 통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.

##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조제6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통은 6 내지 12반으로, 반은 30 내지 60가구”를 “통은 6개 반부터 12개반까지로 하고, 반은 30가구부터 60가구까지”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명칭 및 관할구역)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제2항 본문 중 “당해 관할구역내”를 “해당 관할구역 내”로 하고, “25세이상 65세미만”을 “25세 이상 65세 미만”으로 하며, “받는 자중”을 “받는 자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3항의 절차에 의하여”를 “제3항의 절차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“3개월이상”을 “3개월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임기중”을 “임기 중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 법령등에 의하여”를 “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”로 하며, “부천시”를 “우리 시”로 한다.

제6조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분리수거등”을 “분리수거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기타 법령에 의하여”를 “그 밖  
에 법령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통계등”을 “통계 등”으로 하고, “공무이외”를 “공무 이외”로 하며, “아니된다”를 “아니 된다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 안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“범위내”를 “범위 안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조례의 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제4조제6항에 따른----- -----.
제3조(획정기준) 통은 6 내지 12반으로, 반은 30 내지 60가구(공동주택은 1동을 기준으로 한다)로 구성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.	제3조(획정기준) 통은 6개반부터 12개반까지로 하고, 반은 30가구부터 60가구까지----- -----.
제4조(명칭 및 관할구역) 구관할동별 통반현황과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, 별표 2와 같다.	제4조(명칭 및 관할구역)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제5조(통반장의 위촉) ① (생략)  ②통·반장은 당해 관할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5세이상 65세미만의 주민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, 주민의 신망을 받는 자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·반장이 될 수 없다. 1.~3. (생략) ③ (생략) ④통·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제3항의 절차에 의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⑤ (생략)	제5조(통반장의 위촉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해당 관할구역 내----- -----25세 이상 65세 미만----- -----받는 자 중----- -----. 1.~3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제3항의 절차에 따라----- -----. ⑤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<p>제5조의2(통·반장의 해촉 및 재위촉의 제한) ① (생략)</p> <p>1. 신체, 정신상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</p> <p>2. 임기중 사망, 통, 반 관할구역 밖으로 진출했을 경우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기타 법령등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동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는데 있어 비협조적인 경우</p> <p>5. (생략)</p> <p>②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자는 해촉일부터 3년간 부천시에서 통·반장에 다시 위촉될 수 없다.</p> <p>제6조(임무) 통·반장은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환경보존운동과 쓰레기 분리수거등 자원재활용 운동에 앞장선다.</p> <p>3. 행정시책 및 기타 주요시정에 대한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동장에게 건의한다.</p> <p>4.~6. (생략)</p> <p>7.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</p>	<p>제5조의2(통·반장의 해촉 및 재위촉의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3개월 이상-----</p> <p>2. 임기 중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----- -----우리 시-----.</p> <p>제6조(임무) -----다</p> <p>-----다</p> <p>음 각 호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분리수거 등-----</p> <p>3. -----그 밖의-----</p> <p>4.~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그 밖에 법령에 따라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비밀유지) 통·반장은 직무상 보관하고 있는 기록 및 통계등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<u>공무이외</u>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<u>아</u>니된다.</p> <p>제10조(실비변상) ①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<u>범위안</u>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②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<u>범위내</u>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<u>시행에</u> 관하여 <u>필요한</u>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8조(비밀유지) ----- -----<u>통계 등</u> ----- -----<u>공무 이외</u>----- -----<u>아</u> -----<u>니 된다.</u></p> <p>제10조(실비변상) ① ----- ----- --<u>범위 안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----- <u>범위 안</u>----- ----- -----</p> <p>제12조(시행규칙) -----<u>시행에</u> <u>필요한</u>----- ----- -----.</p>